

2022. 10. 6.(목) 실시
국기원장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 일 러 두 기 〉

1. 이 안내서의 내용 중 법규명·선거관리위원회 명칭 등은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탁선거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위탁선거규칙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법
- 국기원 정관 정관
- 원장선거관리규정 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선관위
-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 국기원선관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입후보예정자

2. 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

「위탁선거법」 및 「위탁선거규칙」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 등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전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하고, 선거기간 중(2022. 9. 27.~10. 6.)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음.

〈 문 의 처 〉

국기원장선거 관련 문의사항이나 해당 선거관련 법규 및 정관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제보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등록 문의 : 중앙선관위 선거2과 ☎ 02-3294-8344

❖ 투·개표 문의 : 서울시선관위 선거과 ☎ 02-764-0313~4

❖ 선거운동, 명부열람 문의 : 국기원선관위 ☎ 070-7775-9517

❖ 위반행위 신고·제보 등 문의 : 중앙선관위 상주전담반 ☎ 070-8826-5345

※ 선거사무안내책자 및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자료공간 > 선거/법규/정당 > 각종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목 차

● ● I. 국기원장선거 개요 ● ●

1. 선거일 및 투·개표	3
2. 후보자등록	3
3. 선거운동	4
4. 당선인 결정	4

● ● II. 선거인명부 ● ●

1. 선거인명부 작성 등	7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7
3.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8

● ● III. 후보자등록 ● ●

1. 후보자등록 요건	11
2. 후보자등록 신청	13
3.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결정	16
4. 등록무효	16
5. 후보자사퇴 신고	17

•• IV. 선거운동 ••

1. 선거운동의 정의	21
2.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21
3.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원 선임	22
4.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22
5.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22
6.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23
7.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23
8. 주요 제한·금지행위	23

•• V. 투·개표참관 ••

1.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31
----------------------	----

•• 부 록 ••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35
② 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37
③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38
④ 국기원장선거 주요 사무일정	51

I

국기원장선거 개요

주요 신고·신청 등 참고사항

일 정	실 시 사 항	장 소
9. 23.(금)까지 (토·일, 공휴일은 제외)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사전검토	중앙선관위 (선거2과, 209호)
9. 25.(일) ~ 9. 26.(월) 매일 09:00 ~ 18:00	후보자등록신청	중앙선관위 (4층, 407호)
9. 26.(월) 18:00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추첨	
9. 30.(금)까지	소견발표 사전녹화영상 제출	국기원선관위
10. 5.(수)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서울시선관위 (선거과)

I. 국기원장선거 개요

1 선거일 및 투·개표

- 선거일(투표일시) : 2022. 10. 6.(목) (오전 6시 ~ 오후 8시)
 - ※ 선거기간 : 2022. 9. 27.(화) ~ 10. 6.(목) [10일간]
- 개표일시 : 투표종료 후 즉시
- 투·개표방법 :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의한 투·개표
- 개표장소 : 별도 안내
 - ※ 개표장소에는 사전에 승인된 선관위 및 국기원 관계자, 개표참관인만 입장 가능
- 투표 및 개표 절차
 - 투표절차
개인URL 수신(선거인의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 ➡ 온라인투표 시스템접속(PC 또는 스마트폰) ➡ 본인인증(선거인정보) ➡ 투표
 - 개표절차
투표 종료 후 즉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의해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

2 후보자 등록

- 등록기간 : 2022. 9. 25.(일) ~ 9. 26.(월) [매일 09:00~18:00]
- 등록장소 : 중앙선관위 4층 407호

3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 2022. 9. 27.(화) ~ 10. 5.(수) [9일간]
- 선거운동주체 : 후보자, 선거사무원(3인 이내)
- 선거운동의 정의 :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행위,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음.
- 선거운동 방법
 - 전화를 이용해 송화자,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 문자(문자 외 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 명함(길이 9cm 너비 5cm 이내)를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 소견발표 녹화영상을 국기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4

당선인 결정 등

- 당선인 결정 기준 : 정관 제10조제8항
 - 유효투표의 최다득표
 -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태권도 단이 높은 자
 - 태권도 단이 동일한 경우 최종 단의 승단년월일이 빠른 자
- 당선인 결정 : 국기원(중앙선관위는 개표종료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기원에 송부)

II

선거인명부

II.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 등

가. 선거인명부 작성

- 등재자격 : 정관 [별표 2]에 따른 원장선출기구(선거인단)
- 작성권자 : 국기원선관위
- 작성기간 : 2022. 9. 19.(월) ~ 9. 21.(수) [3일간]
- 작성방법 : 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

나.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22. 9. 25.(일)

다. 선거인명부 제출

- 제출처 : 서울시선관위
- 제출기한 : (작성) 2022. 9. 22.(목)까지, (확정) 2022. 9. 26.(일)
- 제출방법 : 선거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선거인명부 열람

- 열람권자 : 선거권자
- 열람기간 : 2022. 9. 22.(목) ~ 9. 24.(토)
- 열람장소 : 국기원선관위 사무실

나.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 신청권자 : 선거권자
- 신청처 : 국기원선관위
- 신청기간 : 2022. 9. 22.(목) ~ 9. 24.(토)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

- 신청사유 :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때
- 신청방법 : 구술 또는 서면

3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 가. 신청권자 : 후보자
- 나. 신청기간 : 후보자등록기간 중(2022. 9. 25. ~ 9. 26.)
- 다. 신청방법 : 국기원선관위에 신청
- 라. 사본교부 : 선거기간개시일까지 선거인명부 사본을 교부
- 마. 기타사항 : 후보자는 교부받은 선거인명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선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사본 교부신청과 관련하여서는 국기원선관위(☎ 070-7775-9517)에 문의



후보자 등록

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검토 안내

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가 일부 누락되면 후보자등록 신청이 접수되지 못하거나 등록이 되더라도 무효로 되는 등 후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후보자등록서류 등의 사전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 예정

대 상	기 간	장 소
후보자등록신청서류	2022. 9. 23.(금)까지 (토·일, 공휴일은 제외)	중앙선관위 (선거2과)

개 요

■ 후보자등록

- 등록기간 : 2022. 9. 25.(일) ~ 9. 26.(월) [매일 09:00~18:00]
- 등록장소 : 중앙선관위 4층 407호

■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서 류 명	수 량	근 거	비 고
원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규정§21②	필 수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1부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임(사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부	위탁선거규칙§10 약정서§7②	기타 필요 서류
사진(3cm×4cm) [전자파일 포함]	2매	약정서§7②	

※ 비고란에 “필수” 표시가 되어 있는 제출대상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규정 제21조제7항에 따라 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됨.(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미제출 시 등록신청 수리 불가)

Ⅲ. 후보자 등록

1 후보자등록 요건 (규정§18)

가. 적극적 요건 : 후보자등록개시일 현재 국기원 태권도 6단 이상인 사람

나. 소극적 요건 : 후보자등록개시일 현재 정관 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법적 결격사유(태권도법 §19, 국가공무원법 §33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정관 등 결격사유(정관 §12)

- 미성년자
- 국기원 또는 기타 소속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정부기관, 체육단체, 기타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정부기관, 체육단체, 기타단체 등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 정부기관, 체육단체, 기타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 또는 제명된 사람
- 정부기관, 체육단체, 기타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함)
- 국기원 승품·단 심사와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해임된 사람
 - ※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또는 국기원 승품·단 심사와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해임된 사람은 2019. 5. 13. 이후의 행위로 인한 형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해임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정관 부칙(정관 제9호) 제3조]

다. 임원의 입후보제한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9단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및 산하(소속)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이었던 자로서 원장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그 직을 사임(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2 후보자등록 신청

가. 등록기간 : 2022. 9. 25.(일) ~ 9. 26.(월) [2일간]

나. 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다. 등록장소 : 중앙선관위 4층 407호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라. 등록신청서 접수순서 : 등록장소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 접수

마. 등록신청서류 목록 및 준비절차

1) 등록신청서류 목록

서 류 명	수량	비 고
<input type="checkbox"/> 원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필수서류)	1부	[별지 1] 서식
<input type="checkbox"/> 첨부서류(필수서류)		
▶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1부	[별지 2] 서식 소속된 적이 있거나 현재 소속된 태권도 및 체육단체 발행
▶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별지 3] 서식
▶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무통장입금증 또는 이체확인증 첨부
▶ 사임(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해당기관의 장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별지 4] 서식
<input type="checkbox"/> 기타 관리상 필요서류		
▶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부	[별지 5] 서식
▶ 후보자의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컬러 3cm×4cm)	2매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slayerse@korea.kr)

2) 등록신청서류 준비절차

○ 원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 작성방법 : ‘부록 ①’ 참고
- 작성서식 : [별지 1]
- 유의사항 : 각 항목마다 사실대로 작성하고, 후보자의 인영으로 날인함.

○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 발급기관 : 소속된 적이 있거나 현재 소속된 태권도 및 체육단체
※ (태권도단체)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및 대륙태권도연맹, 국가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9단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및 산하(소속)단체, 가맹을 승인한 전국연맹체 등 태권도단체
(체육단체)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 (시·도)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단, 국외 국적자의 경우 이에 준하는 단체로 한다.)
- 신청 및 처리기한 등 : 해당단체에 문의
- 발급서식 : [별지 2]

○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 작성 방법 : 후보자가 [별지 3]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한 인영으로 날인

○ 기탁금 납입 증명서류

- 납부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납부계좌 : 농협 301-0316-8943-81 (예금주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출서류 : 무통장입금증 또는 이체확인증

○ 사임(사직)증명서

- 발급 대상 : 「규정」 제18조제3항에 해당되는 직을 가졌던 자

• 입후보 제한 대상자 •

▶ 사직기한 : 2022. 7. 10. (원장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 사직대상 : 다음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사람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9단회,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및 산하(소속)단체의 임·직원

- 발급방법 : 사직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에 신청(해당 단체에 문의)
- 발급서류 :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지 4]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한 인영으로 날인

○ 인영신고서

- [별지 5] 서식에 따라 각종 신고·제출 등 선거에서 사용할 도장의 인영을 날인하여 제출

○ 사진(3cm×4cm, 반명합판) 2매

-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담당자 이메일(slayerse@korea.kr)로 송부

바. 유의사항 : 필수서류에 흠결이 있어 보정·보완을 요구하였으나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이를 보정·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

※ 입후보예정자가 외국어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3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결정

- 가. 시 기 : 2022. 9. 26.(월) 18:00 (후보자등록마감 후 즉시)
- 나. 장 소 : 중앙선관위 4층 407호
- 다. 참 석 :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
- 라. 내 용

•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결정 •

▶ 방 법

-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별지 6) 서식의 위임장 제출]의 추천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함.
 - ※ 추천개시시각에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사람이 추천
-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추천순위를 추천한 후, 그 추천순위에 따라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결정을 위한 추천을 함.

▶ 기호 표기 :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기

- ※ 투표용지에 국외 선거인을 위하여 영문성명 병기

4 등록무효

가. 등록무효 사유

-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2)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이 발견된 때
 -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 나) 피선거권 증명서류
 - ※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임원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사임(사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다) 기탁금 납입 증명서류

나. 등록무효 결정

해당 후보자에게 서면으로 등록무효사유를 통보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지정기간까지 소명이 없거나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5 후보자사퇴 신고

가. 신고시기 :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

나. 신고처 : 중앙선관위(선거2과 : 209호)

다. 신고방법 : 후보자 본인이 직접 중앙선관위를 방문하여 서면([별지 7] 서식)으로 신고

IV

선거운동

IV. 선거 운동

1 선거운동의 정의

가. 선거운동 :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행위
-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3) 통상적인 업무행위

2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가. 선거운동주체 :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나. 선거운동기간 : 2022. 9. 27.(화) ~ 10. 5.(수) [9일간]

다. 선거운동방법

- 1) 전화(문자메시지 전송 포함)를 이용한 방법
- 2)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 3) 명함을 나눠주는 방법
- 4)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단, 온라인투표 시 사전녹화영상을 국기원 홈페이지에 게재)

3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원 선임

가. 신고권자 : 후보자

나. 신고시기 : 설치·선임 시 지체없이

다. 신고처 : 국기원선관위

라. 신고인원 등 : 선거사무소 1개소, 선거사무원 3인 이내

※ 규정 제1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음.

마. 신고서식 : [별지 9, 별지 10] 서식

4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 주 체 :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나.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다. 방 법

-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
- 2)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전송

5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 주 체 :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나.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다. 방 법 : 전자우편(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포함)을 전송

6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 가. 주 체 :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 나.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 다. 규 격 :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 라. 개재사항 :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마. 방 법 :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명함을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7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 가. 진행방법 : 사전녹화영상 및 자기소개서를 국기원 홈페이지에 게시
- 나. 제출방법 : 사전녹화영상을 10분 이내로 제작하여 [별지 8] 서식, 자기소개서와 함께 제출
- 다. 제출기한 : 2022. 9. 30.(금)[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4일 이내]
- 라. 제 출 처 : 국기원선관위
- 마. 게시기간 : 2022. 10. 1.(토) ~ 10. 6.(목)
- 바. 발표내용 : 국기원 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 등

8 주요 제한·금지행위

• 위탁선거법 •

기 간	제한·금지사항
언 제 든 지	▶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 금지(법 §65)
	▶ 선관위 조사 방해, 자료제출 불응 등(법 §66)
	▶ 위원회 조사에 대한 동행·출석요구 불응(법 §68)

가.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 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3) 금지행위

가) 선관위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그 밖의 위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

나)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다)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 또는 탈취하는 행위

4) 벌 칙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선관위 조사 방해 및 자료제출 불응 등 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3) 금지행위

선관위의 조사와 관련한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4)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위원회 조사에 대한 동행·출석요구 불응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3) 금지행위

가)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벌 칙 : 300만원 이하(동행 불응) 또는 100만원 이하(출석 불응)의 과태료

• 정관 · 규정 •

기 간	제한·금지사항
언 제 든 지	▶ 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 제한(규정§ 25)
	▶ 선거운동 기간 제한(규정§ 26)
	▶ 선거인 등에 대한 매수 금지(규정§ 27)
	▶ 호별방문 등의 제한(규정 §27)
	▶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금지(규정 §27)
	▶ 선거운동기구 설치 등 금지(규정 §27)
	▶ 국기원 임·직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금지(규정 §30)

라. 선거운동 기간 제한

- 1) 주 체 : 누구든지
- 2) 금지기간 : 2022. 9. 27.(화) ~ 10. 5.(수) [9일간]을 제외한 기간
- 3) 금지내용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

마. 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 제한

- 1) 제한주체 :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을 제외한 누구든지
- 2) 제한방법 : 규정 제25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의 선거운동

바. 선거인 등에 대한 매수 금지

- 1) 주 체 : 누구든지
- 2) 제한시기 : 언제든지
- 3) 주관적 목적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4) 금지내용

- 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나)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다)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사. 호별방문 등의 제한

- 1) 주 체 : 누구든지
- 2) 제한기간 : 언제든지
- 3)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 4) 금지내용
 - 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나)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아.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금지

- 1) 주 체 : 누구든지
-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 3)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 4) 금지행위 : 전화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

자. 임·직원 등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금지

- 1) 주 체 : 국기원의 임·직원 등

※ 정관 제6장부터 제9장에 소속된 자 포함

- 2) 제한기간 : 언제든지

- 3) 금지내용

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국기원 임·직원 등이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반행위

※ 다만, 규정 제30조(국기원 임·직원 등 중립의무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
거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거나 각종 선거사무의
대행 등을 위하여 국기원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를 지원·협조하는 것은 선거
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로 보지 아니함.

• 벌칙 규정 •

제28조(벌칙)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장선거에 관해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해서 적발된 사람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후보자에 한정한다)

나. 선거인의 선거권 박탈

다. 국기원 상벌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 징계 요청

라. 추후 국기원 관련 모든 행사, 사업, 심사, 자격 취득 등에 응시, 참여 제한과 태권도 단체의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태권도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에 한해 적용한다)

마. 국기원을 통해 취득한 품·단, 사범, 심판, 심사위원 등 각종 자격의 정지, 제명 조치 및 각종 증명서의 교부 제한

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사.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동시에 처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경미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정한다)

나. 선거인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다.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온라인투표의 경우 국기원홈페이지에 게시)

라.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동시에 처할 수 있다.

② 제21조 제2항 제5호의 서약서(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가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영구제명 되며, 당선인의 경우에는 당연 당선 취소가 된다.



투·개표참관

V. 투·개표참관

• 투표참관에 관한 사항

- ▶ 온라인투표(웹투표 또는 문자투표)의 경우 투표참관은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탁단체(국기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 ※ 참관여부 및 신고방법 등 추후 별도 안내
- ▶ 참관방법 : 투표자수, 투표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 계정을 투표참관인에게 부여하여 투표진행상황을 참관
- ▶ 기타사항 : 투표참관을 실시할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할 수 있음.

1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가. 신고권자 : 후보자

나. 신고기한 : 2022. 10. 5.(수)까지

※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개표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봄.

다. 신고처 : 서울시선관위 선거과

라. 신고인원 : 후보자마다 2명 이내

마. 신고서식 : [별지 11] 서식에 따라 신고

바. 개표참관인 자격 : 선거인

※ 다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국기원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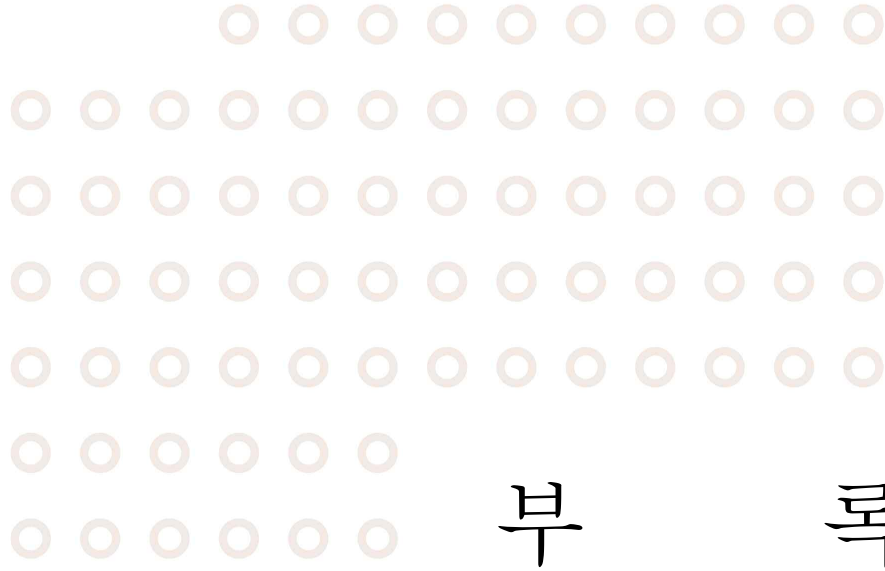
사. 개표참관인 자체선정

-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경우, 서울시선관위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함.

아. 교체시기 : 신고 후 언제든지(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도 교체 가능)

자. 참관방법

- 온라인투표 시스템운영자의 화면과 동일한 내용이 표출되는 별도의 화면을 통해 개표진행, 개표결과 등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
- 개표참관인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표책임사무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 개표책임사무원은 개표참관인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 개표참관인은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② 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준수사항
- ③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 ④ 국기원장선거 주요 사무일정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가. 작성예시

원 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명	(한글) 홍길동 (한자) 洪吉洞 (영문) Hong Gil Dong			사진
국적	대한민국	성별	남	
주소	경기도 ○○시 ○○구 △△로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구 □□로 ◎◎			
연락처	(자택) 031)123-4567		(휴대전화) 010-0000-0000	
직업	사업	전자우편(E-mail)	abcde@ooo.ooo	
보유 단	9단	단 번호	01234567	
학력 및 경력				
연 월 일	내용			
0000. 00. 00.	○○대학교 □□학과 졸업			
0000. 00. ~ 0000. 00.	(전) ○○대학교 교수			
0000. 00. ~ 0000. 00.	(전) ○○○ 이사			
0000. 00. ~	(현) ○○협회 회장			
<p>2022년 10월 6일 실시하는 국기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p> <p>2022년 9월 25일</p> <p>성명 홍길동 (인)</p> <p>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 첨부서류 1.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2. 임원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3. 기탁금 납입 증명서류 1부
 4. 사임(사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6. 인영신고서 1부
 7. 후보자의 사진 (컬러 3cm×4cm) 2매(전자파일을 함께 제출)

나. 작성요령

기재항목	기 재 요 령
“성명” 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과 한자, 영문을 병기함.(국의 국적자는 영문만 기재) • 한글로 표기된 성명은 그대로 투표용지에 인쇄하게 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외국국적 후보자는 여권)에 기록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발급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발급(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영문으로 표기된 성명 역시 투표용지에 그대로 인쇄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함(영문이 길어 투표용지 인쇄가 어려울 경우 약자로 기재될 수 있음).
“국적” 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본인의 국적을 기재
“주소” 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상의 후보자 본인의 도로명 주소지를 기재 ※ 외국국적 후보자의 경우 국내 또는 국외 거소 기재
“주민등록번호” 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외국국적 후보자의 경우 생년월일 기재)
“등록기준지” 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내국인에 한하여 기재하며 외국인의 경우 미기재)
“직업” 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본인이 후보자등록신청 시 현재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을 기재함. ☞ 예시) 사업, 대학교수 등
“학력 및 경력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은 최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1개를 출신학교명 또는 수학한 교육과정명 등을 사실대로 기재함. ※ “학교명”은 졸업·수료당시의 학교명을 말함. ※ 외국학력의 경우에는 한글번역문도 함께 제출 ※ 정규학력을 수학한 이력이 있는 자는 ‘독학’ 또는 ‘무학’으로 기재 불가 (다만, 학력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미기재’로 기재할 수 있음) • 경력은 중요한 사항(3개 정도)만을 기재함. ※ 현직의 경우 “현”, 전직의 경우 “전”으로 표시함.
“신청인” 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함.

② 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 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

1. 최소 수집 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성명·전화번호·이메일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원장선거관리규정」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규정	개인정보 항목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전화, 문자)	제25조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이메일주소

2. 정보주체의 수집 출처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1)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고지해야 하는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2) 수집출처에 관한 사실을 모른다거나 알 수 없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

3.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관련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끝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 기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참조

③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 원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3.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5. 인영신고서
6.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추첨 위임장
7. 원장선거 후보자 사퇴신고서
8. 후보자 소견발표 영상물 제출서
9. 선거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
10. 선거사무원 (교체)·선임신고서
11. (투표)·(개표)참관인 신고서

원 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사진
국적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연락처	(주택)	(휴대전화)		
직업		전자우편(E-mail)	@	
보유 단	단	단 번호		
학력 및 경력				
연 월 일	내용			
2022년 10월 6일 실시하는 국기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2년 9월 일				
성명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1.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2. 임원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3. 기탁금 납입 증명서류 1부
 4. 사임(사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6. 인영신고서 1부
 7. 후보자의 사진 (컬러 3cm×4cm) 2매(전자파일을 함께 제출)

- 주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은 여권)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2. 학력은 최종학력을 적고 경력은 중요한 사항(3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후보자 인적사항 등	
성 명	
주민등록표 상 생년월일	
징계사실 유무	<input type="checkbox"/> 징계사실 있음 <input type="checkbox"/> 징계사실 없음
징계내역	
① 징계내역 1	
징계일자	
징계사유	
징계 시 신분 및 징계종류	
② 징계내역 2	
이 하 생 략	

「원장선거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단 체 장 명 (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징계가 여러 건이 있는 경우 모두 적음(별지로 작성 가능)
2. 외국국적 후보자의 경우 생년월일 기재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국기원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국기원 정관 및 원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9월 일

성명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국기원장선거 후보자 등록 등 국기원장선거 관련 사안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소속단체명,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동의한 날로부터 해당 원장 임기까지 보관하며, 임기 만료 후 바로 삭제

라.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가.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국기원장선거 후보자 등록 등 국기원장선거 관련 사안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각종 자격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한 날로부터 해당 원장 임기까지 보관하며, 임기 만료 후 바로 삭제

라.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선거인, 국기원 임원, 국기원 홈페이지 이용자 등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국기원장선거 후보자 등록 등 국기원장선거 관련 사안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에 의한 위탁선거 관리사무 수행 등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소속단체명,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등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날로부터 해당 원장 임기까지 보관하며, 임기 만료 후 바로 삭제

마. 귀하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2022년 9월 일

본인 성명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인 영 신 고 서

후 보 자 ○ ○ ○	인 영

2022년 10월 6일 실시하는 국기원장선거에서 사용할 인장의 인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2 년 9월 일

성명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추첨 위임장

피 위 임 자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후 보 자 와 의 관 계	

위 사람에게 2022년 10월 6일 실시하는 국기원장선거의 투표용지 게재
순위(기호) 추첨을 위임합니다.

2022년 9월 일

후 보 자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원장선거 후보자 사퇴신고서

1. 후보자 성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사 퇴 사 유 :

본인은 2022년 10월 6일 실시하는 국기원장선거 후보자를 사퇴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 일

후 보 자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외국국적 후보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후보자 소견발표 영상물 제출서

1. 성 명 :
2. 기 호 :

2022년 10월 6일 실시하는 국기원장선거에서 원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에 따라 후보자 소견발표 영상물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임 1. 소견발표 영상물 1부.
2. 자기소개서 1부. 끝

2022년 9월 일

후 보 자 (인)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소견발표 영상물은 10분 이내로 작성합니다.
2. 자기소개서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를 포함하여 2면(21*29.7cm)으로 작성합니다.

선거사무소 (설치) · (변경)신고서

1. 후보자 성명 :

2. 신고내역

명칭	소재지	(설치) · (변경)	연월일	전화번호	비고
선거 사무소					

2022년 9월 일

신고인 후보자 (인)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명칭"란에는 선거사무소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소재지"란에는 지명으로 알아보기 쉬운 건물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선거사무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 안에 둘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원 (교체)선임 신고서

1. 후보자 성명 :

2. 신고내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선임 연월일	비고
선거 사무원							
선거 사무원							
선거 사무원							

2022년 9월 일

신고인 후보자 (인)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6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교체선임 신고시 비교란에 “○○○와 교체”라고 적습니다.

(투표)·(개표)참관인 신고서

1. 후보자 성명 :

2. 참 관 인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직 업	비 고

2022년 10월 6일 실시하는 국기원장선거에서 (투표)·(개표)참관인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2년 9월 일

후 보 자 (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구분"은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교체신고시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자 "○○○과(와) 교체"라고 적습니다.
 3. 개표참관인이 투표참관인을 겸임할 경우 투표참관인 신고서의 비고란에 "개표참관인 겸임"으로 적습니다.

국기원장선거 주요 사무일정

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 조문
6. 11.(토)까지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국기원	임기만료일(10. 11.) 4개월 전까지	규정§3
7. 10.(일)까지	입후보제한자 사직기한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 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9단회, 대한장애인태권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및 산하(소속)단체의 임·직원)	국기원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규정 §18③
9. 6.(화)까지	대행위원회 지정·공고	중앙선관위	선거일 전 30일까지	규칙§6③
9. 11.(일)까지	선거일 등 공고 (후보자 공모에 대한 공고 포함)	중앙선관위	선거일 전 25일까지 ※ 후보자공모 공고기간(14일 이상)	규정§20 규정§23
9. 19.(월) ~ 9. 21.(수)	선거인명부 작성	국기원선관위	선거일 전 17일부터 3일간	규정§16
9. 22.(목) ~ 9. 24.(토)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국기원선관위로>	선거권자	명부작성만료일 다음날부터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법§16 규정§17
9. 25.(일)	선거인명부 확정	국기원선관위	선거일 전 11일	규정§17③
9. 25.(일) ~ 9. 26.(월)	후보자등록 <중앙선관위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동안	법§18① 규정§21①
9. 26.(월)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	후보자등록마감 후	법§42② 규정§21⑨
9. 27.(화)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운동기간 : 9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법§13② 규정§23①
9. 27.(화)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서울시선관위	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43
10. 1.(토)까지	개표소 공고	서울시선관위	선거일 전 5일까지	규칙§25①②
10. 4.(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서울시선관위로>	후보자	선거일 전 2일까지	법§45① 규정§37①
10. 5.(수)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서울시선관위로>	후보자	선거일 전일까지	법§45① 규정§37①
10. 6.(목)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 (온라인투표시스템)	서울시선관위	선거일	법§44 규정§36
투표마감 후	개표 (온라인투표시스템)	서울시선관위	투표를 마감한 후	법§47 전산규칙 §37①
11. 5.(토)까지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중앙선관위	선거일 후 30일까지	규칙§44②